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2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김정호 · 윤후덕 · 이연희
이성윤 · 서왕진 · 전진숙
박 정 · 이수진 · 임미애
최혁진 · 박해철 · 허종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시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제12호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호의2의”를 “제5호의 2·제12호의”로 한다.

12.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 이용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사이의 매개체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의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부가통신서비스의 가입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변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제99조제5호 중 “제5호의2의”를 “제5호의2·제12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 ----- -----한정하며, 제12호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 ----- ----- ----- ----- ----- ----- ----- ----- ----- -----.
1. ~ 11. (생략) <u><신설></u>	1. ~ 11. (현행과 같음) 12. <u>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 이용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사이의 매개체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의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u>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부가통신서비스의 가입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변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illegible]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u>제5호의2의</u>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5. ----- ----- ----- ----- ----- <u>제5호의2·제12호의</u> -----